# 노인장기요양보험: 대상질환 및 진료의뢰 절차

인제대학원 대학교 서울백병원 내과

# 권 인 순

#### 1. 노인장기요양보험

치매·중풍·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·목욕·배변처리·식사·세탁·주변 환경 정리·간호처치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.

수급자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## 2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(표1 참고)

## 3. 이용 방법 및 종류

## 1) 이용 방법

(1) 수급자: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 급,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내에서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 이용. 수급자와 가족이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 여 이용한다.

## 2) 요양급여의 종류

(1) 재가급여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 보호, 단기보호, 기타(복지용구대여, 구입)

(2) 시설급여: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#### (그룹홈)

(3) 특별현금급여: 가족요양비

## 4. 인정 및 이용절차

신청  $\rightarrow$  방문조사  $\rightarrow$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$\rightarrow$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$\rightarrow$  의사소견서 제출  $\rightarrow$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$\rightarrow$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 이용계획서 통보  $\rightarrow$  서비스 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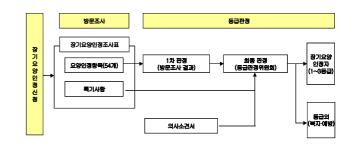


Table 1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

구 분	적용대상자 범위
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	전국민 【장기요양보험가입자(건강보험과 동일) + 의료급여적용 대상자】
보험료를 부담하는 대상자	장기요양보험가입자 (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)
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(장기요양인정 신청인)	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
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 (수급자)	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

## •의사소견서

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한 당해 신청인의 등급판정 심의 전날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, 국민건 강보험공단이 도서 벽지에 거주하거나 심신 및 거동상태가 현 저히 불편한 자로 판단하여 의사소검서 제출 제외자<sup>\*</sup>로 통보한 \_\_\_\_ 험료 경감 도서·벽지지역 <del>주용</del>

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.

- •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
- 1) 도서·벽지지역 거주자 (보건복지부장관 고시) : 건강보

Table 2.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: 치매·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 등

65세 미만자에 한하여 기입하며, 해당하는 질병에 √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☐ F00 □ F01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□ F02 상세불명의 치매 ☐ F03 알쯔하이머병 ☐ G30 거미막밑 출혈 ☐ I60 뇌내출혈 □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☐ I62 ☐ I63 뇌경색증 한국표준질병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☐ I64 · 사인분류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☐ I65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☐ I66 기타 뇌혈관 질환 ☐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☐ I68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☐ I69 □ G20 파킨슨병 속발성 파킨슨증 ☐ 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☐ 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☐ G23 매병, 노망 □ 자01 졸중풍 □ 다04 한국표준질병 • 사인분류 중풍후유증 □ 다06 (하의) 진전(振顫)1 □ 다05 □ 차02.2 진전(振顫)2

- ※ 1) 65세 미만자 중 상기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.
  - \* 신청인이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위 진단표를 기재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- 2)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, 상기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단의 사항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  - 3)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찰료 등 실비는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하며 전액 신청인(본인)이 부담하여야 하며, 상기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외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 등은 신청인(본인)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  - 4) 노인성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이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.

- 2)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(보건복지부장관 고시)
- (1)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(2)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'신체기능(기본적 일상생활기능)영역' 중 "⑨방밖으로 나오기"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"⑥체위변경하기", "⑦일어나 앉기", "⑧옮겨 앉기"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

#### 5. 신청 자격 및 절차

1) 신청자격: 65세 이상의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 세 미만의 자(표2 참고)

## 2) 신청절차

- (1) 신청시기: 2008년 4월 15일부터 신청 받는 것이 시작되었고, 실제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.
- (2) 신청장소 :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. 읍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는 2008년 9월 1일 이전에 가능했었다.
  - (3) 신청서 제출 :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
  - (4) 구비 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

## 6. 장기요양 등급과 통보

# 1) 등급

등 급	수 준
н	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1 등 그	<ul> <li>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</li> <li>식사, 옷입기, 씻기 등의 신체활동에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 필요</li> <li>중증 치매로 기억,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</li> </ul>
	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2 등 급	<ul> <li>먹고, 입고,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</li> <li>치매로 기억,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 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</li> </ul>
3	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
등 급	- 먹고, 입고,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행동에

-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
  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
- 2) 통보: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이 1~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등급,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'장기요양인정서'를 개별 통지. 여기에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동봉되어 있다.

## 7. 의사 소견서 작성

- 1)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
- 가. 기능 장애 원인 진단명 및 발병연월일
- 나. 상기질환의 현재 치료내용
- 다. 향후상태의 변동성
- 2) 심신상태에 관한의견
- 가. 신체상태
  - (1) 근력
  - (2) 관절운동범위
  - (3) 운동상태
- 나. 정신상태
  - (1) 인지기능
  - (2) 문제행동 유무
- 다. 일상생활자립도
- 3)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
- 4)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
- 가 향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학적 문제
- 나. 가장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
- 다.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
- 5) 기타 특기사항
- 6)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된 정보